

일반공급 안내문_가점제

□ 서류접수기간

신청 방법 / 당첨자 및 등·호수 발표	당첨자 사전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방법 : 인터넷 청약[청약Home] (www.applyhome.co.kr) / 청약통장 은행 구분 없음 · 당첨자 및 등·호 발표일 : 2021.10.21(목) 	<p>2021.10.22(금) ~ 2021.10.31(일) (10:00 ~ 16:00)</p> <p>당사 견본주택 : 강릉시 교동 30번지</p>

□ 구비서류 [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.09.30. 이후 발행분]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대상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				
공동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현재 까지로 설정	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· 인감증명서 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	
추가 서류 (해당시)	○		청약통장잔수 확인서	배우자	· 인터넷 청약(청약 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
	○		복무확인서		·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	
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증빙서류	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	○		국내거소신고증		·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	·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]	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피부양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	직계존속	·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~ 현재까지 설정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피부양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피부양직계비속	·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"포함"하여 발급
대리인 제출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대리인 인적 사항이 기재된 발급서류에 한함)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	
	○		신분증	대리인	·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	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대리인 인적 사항이 기재된 발급서류에 한함)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	

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임
-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30)이후 발행분에 한함
- ※ 상기 서류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※ 서류접수 및 계약이후라도 주택소유 등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시행 2020.09.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,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